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 수입 신고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(3근무시간 이내)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

수입허가 번호		허가 연월일 . .
업소명		대표자 성명
종류 및 수량		적재지
선박명		입항지
입항 연월일	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선하증권	수수료 없음

유 의 사 항

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 내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